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0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서지영·박덕흠·박충권

송석준 • 박성훈 • 조경태

성일종 · 인요한 · 김용태

서일준 • 이인선 • 이헌승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정부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지역마다지원 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 등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 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야 함(안 제7조).
- 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 어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를 지정하여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정서·행동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 및 지원해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 등은 선정된지원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 17조).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며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음건강"이란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학생이 성장기 발달 특성에 맞게 사회적·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 2. "사회·정서 역량"이란 자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조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한다.
-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

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 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교육·상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1.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사회·정서 역량 함양에 관한 사항
 - 3.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정서 역량 함양 및 정서·행동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체계의 구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 2.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3.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4.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5.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제도 의 정비 및 매뉴얼의 개발·보급
 - 6.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 7.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

-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 적의 평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 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학교,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 지원
 - 2.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 석 및 연구 지원
 - 3. 학생 및 학부모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4.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

- 5.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 6.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 등 위기관리 지원
- 7.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8.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지원 운영 및 연계 지원
- 9. 제17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 보급
- 10. 학생 마음건강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 11.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지정·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감의 임무 등) ①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증진 등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

건강·상담·학생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교육감 소속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 2.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 조정
- 3.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및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하 기 위한 연계 체계의 구축
- 4. 제10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 5.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
- 6.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
- 7.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교원연수·컨설팅 등 학교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역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 우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또는 지정의 기준·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치유·교육 지원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생마음 건강회복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③ 학생마음건강회복기관의 종류·기능, 설치·운영, 출석 일수의 인정 및 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① 교육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이하 "정신건강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정신건강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 제공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역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전문가가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지원하도록 할 수있다.
- ④ 정신건강전문가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과를 확인하고, 지역지원센터에 연계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정신건강전문가의 지정과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역지원센터, 학생마음건강회복기 관, 정신건강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교육감이 미리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학생 사회 · 정서 역량 강화 및 마음건강 지원

- 제14조(사회·정서 역량의 함양)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 등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음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이 정서・행동 문제로 지원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정서・행동 지원대상 학생(이하 "지 원대상 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절차·기준에 따라 요청을 한 사람, 학생 본인 및 보호자, 관련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생에 대한 상담결과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 위기학생지원, 학생상담 등을 위한 학교 내 위원회 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그 결과(기존 상담결과를 포함한다)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교육감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대상 학생의 선정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선정된 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학생·학부모에 대한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제6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문제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심리, 건강, 안전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도 긴급한 지원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실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6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17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학생 상담·지도·치료연계 등에 대

- 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 직과정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교육과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라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